

충청북도 승강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
검 토 보 고 서



**충청북도의회**  
**산업경제위원회**

# 충청북도 승강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

## 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연종석 의원 등 7인

### 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- 발의일자 : 2020년 11월 17일
- 회부일자 : 2020년 11월 19일

### 3. 제안이유

- 충청북도 승강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승강기 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함

### 4. 주요내용

- 승강기산업의 육성·발전에 관한 시책 수립, 기반시설 조성, 인력 양성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하는 도지사의 책무 규정(안 제3조)
- 승강기산업 발전을 위해 매년 승강기산업 육성에 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(안 제4조)
-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(안 제6조)
- 승강기산업 육성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등을 자문하기 위하여 15명 이내의 승강기산업육성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(안 제8조)

## 5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우경수)

### 가. 제출배경

- 승강기는 24시간 운행되는 국민생활 편의시설이며, 안전과 직결되는 산업으로 국내는 매년 6% 이상의 고성장을 이어가고 있음
  - ※ (시장규모) 약 4.5조원 / (제조·수입업) 220여개 / (유지관리업) 800여개
- 승강기산업은 '4차 산업혁명 시대'의 기계·전기·전자의 복합기술로 이루어진 고급 선진기술의 집합체로 부각되고 있음
- 현대엘리베이터 충주 이전으로 승강기산업 발전 제반여건이 조성됨에 따라 산업육성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여 차세대 승강기산업 거점지역 도약으로 기대감 제고
  - ※ 현대엘리베이터 본사 및 공장이전에 따른 승강기 산업 중심지 도약
    - 투자계획 : 충주시 제5산단(부지 15만㎡, 건축 13만㎡) / '19~'28(10년간) 2,500억원
    - 파급효과 : 본사 이전(인력 550여명)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모기업 중심의 동반이전 기대
- 승강기산업 국·내외 시장 비교우위 선점과 차세대 승강기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근거 마련 필요

### 나. 주요 검토내용

- 안 제3조는 승강기산업의 육성·발전에 관한 시책 수립, 기반시설 조성, 인력 양성, 기술개발 및 마케팅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하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
- 안 제4조는 승강기산업 발전을 위해 매년 승강기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 방향과 지원 사업 등을 포함한 승강기산업 육성에 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
- 안 제5조는 승강기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규정하고, 안 제 6조는 보조금 등 사업비 지원 근거를 마련함

- 안 제7조, 제8조와 제9조는 승강기산업 육성 추진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승강기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와 구성,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
- 안 제10조는 승강기산업 육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단체 등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함

#### 다. 종합 검토의견

- 충북 북부권 승강기산업거점지역 조성 연구용역 완료에 따른 승강기산업 육성 방안이 마련됨에 따라 승강기산업 국·내외 시장 비교우위 선점과 차세대 승강기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서
- 지속성장 가능한 스마트 승강기산업 생산기반조성과 안전기술 역량 강화로 일자리 창출, 기업유치, 매출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, 승강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